

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계약)

대상자와의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이 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입소비용) <개정 2018.01.01.>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계약서에 명기한다.

◇ 시설급여 (1일)

(2018년 1월부터 기준 실시 적용)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 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65,190원	60,490원	55,780원
비 급 여	상급침실 이용료	10,000원		
	식재료비(1식)	3,000원/끼 9,000원/일		
	간식비(1회)	1,000원/일		
	이/미용료등	5,000원/월		

◇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노인요양시설(개정법)	771,140원	742,940원	714,680원

구 분		금액(원)		내 역
요양보험	소 계	1등급	2등급	3등급
(20%)공단 자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	391,140원	362,940원	334,680원
본인부담금 (비급여)	소 계	380,000원		
	건강상담프로그램	75,000원		
	식사재료비	270,000원	9,000원 X 30일	
	간식비	30,000원	1,000원 X 30일	
	이미용	5,000원	5,000원 X 1회/월	
상급침실 이용료		300,000원	10,000원 X 30일	

1. 경감대상자 및 의료수급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 40%로 차등적용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3. 직원의 직계존속 입소 시 비급여의 10%를 감면해준다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비급여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비, 이미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급여를 말한다.

2. 비급여 항목외 실비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3.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④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때

(계약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제 및 종료]

①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산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2개월 이상 지체했을 경우

다.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라.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①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을”이 정한 계약서를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침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③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시설에 알리지 않고 침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종료]

①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②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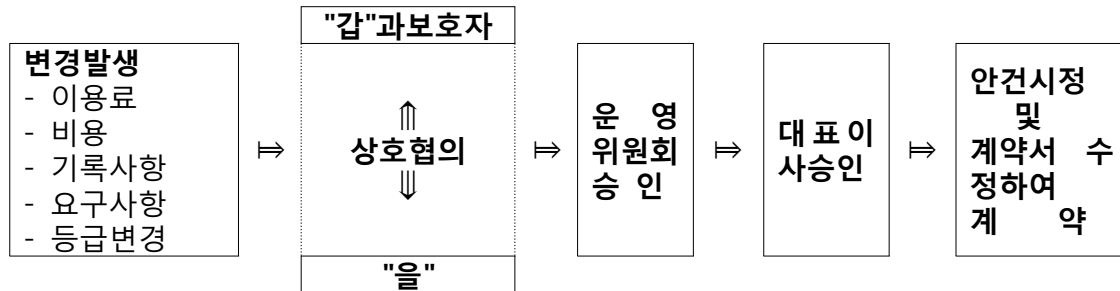
4. [장기요양급여 내용(이용료 및 비용포함)의 변경 및 절차]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③ 변경사항 절차



5.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제공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과 면책범위]

손해배상책임 면책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갑"과 "병"은 "을"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① 제 16조 2항의 ① ~ ④ 범위,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 ②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의 배상책임
- ③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한 문제(상해 및 사망 등)와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질병악화 등)에 대한 배상책임

7. [시설물 사용]

- ① "갑"의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원무 행정상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단 "갑"이나 "병"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에게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갑"은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④ "갑" 또는 "병"이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8. [분쟁해결방법]

장기요양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